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06 발의연월일: 2025. 4. 10.

발 의 자:김상훈·강대식·김소희

김선교 • 서명옥 • 고동진

박충권 • 이달희 • 박수영

권영진 · 신동욱 · 김대식

이헌승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,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등 우수 공무원과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사망한 때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할 수 있도록하고 있음.

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,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 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,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일반승진시험 우선응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40조의4제1항제6호 신설 및 제74조

제1항).

법률 제 호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의4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5급 이하의 공무원으로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제7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- ①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되, 자녀가 2명인 공무원의 정년은 61세, 자녀가 3명인 공무원의 정년은 62세, 자녀가 4명 이상인 공무원의 정년은 63세로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40조의4(우수 공무원 등의 특 제40조의4(우수 공무원 등의 특 별승진) ① 공무원이 다음 각 별승진) ① -----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 40조 및 제40조의2에도 불구하 고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. 1. ~ 5. (생략)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5급 이하의 공무원으로서 3 <신 설>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74조(정년) ① 공무원의 정년은 제74조(정년)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60세로 하되, 자녀가 2명인 공 무원의 정년은 61세, 자녀가 3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 명인 공무원의 정년은 62세, 자 녀가 4명 이상인 공무원의 정 년은 63세로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생 략)